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7163
결재일자	2016.2.22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복지담당	교육문화복지담당		
백지훈	김기란	이만형	02/22 박형중		
협 조					

2016년 성북구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

2016. 2.

교육문화복지국
어르신복지과

2016년 성북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

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'성북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'에 예산 등 지원으로 편의증진을 도모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I 운영 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23조(편의시설)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
- 보건복지부 지침(장애인복지 사업안내)

II 운영 현황

- 사업주체 : 사단법인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(지회장 이성훈)
 - 운영주체 : 성북구 지체장애인협회 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
 - 소재지: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가길 100
 - 운영인력 : 3명
 - 센터장1명, 기술요원(건축전문가)1명, 행정요원1명
- 운영기간 : 2016. 1. 1 ~ 12. 31

III 2015년 운영실적

- 2015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관리 및 실적
 - 모니터링요원 교육, 근무상황, 점검업무 관리
 -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홍보 1,016건, 계도 92건
-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상담안내반 운영 1개소

■ 장애체험행사 및 인식개선사업 1회 개최

■ 건축협의 관련 종합실적

계	건축허가	사용승인	민원상담	홍보	전수조사
751	275	99	117	1	259

IV 2016년 운영계획

■ 사업내용

-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신축, 증축 등 설계도면에 대한 기술적 지원
- 「서울형 무장애인증」 신청건물 현장조사
-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매뉴얼 개발
-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
- 장애인편의시설모니터링사업 업무 협조수행
- 실태조사 참여 및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
-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안내 등
- 편의시설 불편신고센터 및 상담실 운영

■ 예산관리

-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규칙을 준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

V 예산

■ 연간보조금 89,156천원(시비50%,구비50%) (단위:천원)

총액	인건비	운영비	비고
89,156	80,268	8,888	2015년 대비 4.7% 증가

※ 2015년 예산편성액 : 85,186천원

■ 예산과목 : 어르신복지과, 장애인복지운영, 장애인편의시설,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, 민간이전,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

VI 행정 사항

■ 협약체결(구 - 센터)

- 구 -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(별첨)

■ 지도감독

-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련 업무에 대해 연2회(5월, 11월) 구청 지도 점검 실시

■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(센터 → 구)

- 실적 및 정산서를 다음 분기 10일까지 제출

붙임 : 장애인편의시설관련사업 협약서 1부. 끝.